의안 번호	2535	[2025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(2차)안] 검 토 보 고 서

1. 검토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5. 12. 5.(금)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5. 12. 5.(금)

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5. 12. 18.(목)

2. 제안이유

○ 이자수입 증가 및 비융자성사업비 미집행 반영 등 수입·지출 계획 변경으로 인해 2025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2025년도 기금 조성액 (4,852,184천원 → 14,257,968천원, 증 9,405,784천원)

(단위: 천원)

구분	2024년도 말 조성액(A)	2025년도 조성계획			2025년도 말 조성액 (A+D)
		수입(B)	지출(C)	증감 (D=B-C)	
변경(1차)	12,929,503	1,622,681	9,700,000	△8,077,319	4,852,184
변경(2차)	**12,929,503**	**1,328,465**	**0**	**1,328,465**	**14,257,968**

나. 수입계획

(단위: 천원)

항 목	수입금액	기정액	증 감
계	**14,257,968**	**14,552,184**	**△294,216**
전입금	800,000	800,000	0
예치금회수	12,929,503	12,929,503	0
이자수입	397,028	392,681	4,347
기타수입 (공유재산매각수입)	131,437	430,000	△298,563

다. 지출계획

(단위: 천원)

항 목	지출금액	기정액	증 감
계	14,257,968	14,552,184	△294,216
비융자성사업비	0	9,700,000	△9,700,000
예치금	14,257,968	4,852,184	9,405,784

라. 2025년도 말 조성액 증가 (4,852,184천원 → 14,257,968천원, 증 9,405,784천원)

- 미집행 비융자성 사업비 정기예금 예치, 이자수입 등 연말 조성액 증가

마. 2025년도 수입계획(14,552,184천원 → 14,257,968천원, 감 294,216천원)

- 이자수입 증가 (392,681천원 → 397,028천원, 증 4,347천원)
  - 매각대금 및 전입금을 정기예금 예치, 이자수입 증가 등
- 공유재산 매각수입 감소 (430,000천원 → 131,437천원, 감 298,563천원)
  - 공유재산 매각수입 감소분 반영 ※ 매각물량 감소

바. 2025년도 지출계획 변경 (14,552,184천원 → 14,257,968천원, 감 294,216천원)

- 비융자성사업비 미집행 반영 (9,700,000천원 미집행, 감 9,700,000천원)
  - 청사 증축 설계용역 추진중 소규모재해영향평가 검토의견 반영을 위한 사면검토 용역 추진에 따른 설계용역 중지 및 착공일정 순연으로 청사 증축 건축비 미집행
- 예치금 증액 반영 (4,852,184천원 → 14,257,968천원, 증 9,405,784천원)
  - 청사 증축 건축비 미집행액은 금융기관 정기예금으로 예치

4. 근거 법규

가.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」 제11조

나. 「울산광역시중구 신청사 등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

5. 검토의견

❍ 본 계획안은 이자수입 증가 및 비융자성사업비 미집행 등 재정여건 변동을 반영하여 2025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, 기금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용을 위한 필요 조치이며 관련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근 거 법 규
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

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.

1.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
2.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
3.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
2. 「재해구호법」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

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.